#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

발의연월일: 2020. 6. 3.

발 의 자:이개호・양향자・서삼석

송갑석 · 김승남 · 김원이

위성곤 • 유동수 • 김경협

소병철 · 민홍철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대도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고향납세(故鄕納稅)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얻은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지출한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4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4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고향사 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